「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10월 2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6년 10월 8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10월 13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행정담당관)

가. 제안이유

○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행정구역 정비 및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행정리 간 경계 조정

- 봉평면 원길1리 7반 일부를 창동2리 3반으로 편입
(원길리 275-2, 277, 277-1, 277-2, 277-5, 277-6, 279, 280, 282-2, 304-3, 304-10번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행정리 간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와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, 실제 주민 생활 여건에 부합하는 행정구역 정비라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❍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2항에서는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·설치·분할·통합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리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또한 「평창군 행정리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」 제2조에서는 행정리를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

❍ 이번 개정안은 도로 개설로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상이한 봉평면 원길1리 7반 일부 토지(원길리 275-2번지 등 11필지)를 창동2리 3반으로 편입하여 행정리 간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,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❍ 다만, 현행 조례 별표에는 행정리 관할구역이 ‘종전 ○○리 일원’ 또는 ‘종전 ○○리 일부’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, 구체적인 관할 범위와 경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전문 용역 등을 통해 행정리별 관할구역을 정밀하게 조사하고,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번 또는 경계도 등을 활용하여 관할구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, 주민 편의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